



중소·중견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·운영에 대한 지원 본격화

특허청, 우수기업 인증확대,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



중소기업의 A 대표는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4~6년차 등록료를 납부하려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50%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우수한 기술력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결과 연평균 30여건의 직무발명이 창출되고, 특허 보유건수와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 유지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.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A대표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.

한편, 중견기업의 지식재산팀 B과장은 발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올해 1월말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통상실시권이 제한될 수 있고, 보상규정을 제·개정할 경우 종업원과 협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해서, 무엇보다 어찌해야 할지를 고민하던 중에 특허청에서 심층 컨설팅을 통해 제도도입에서 운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다.

특허청(청장 김영민)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·지원하고, 제도를 도입·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, △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확대 △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△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보상문화 확산을 골자로 한 '2014년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'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.

우선 다수 특허권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중소·중견기업을 타겟으로 설정하여 대상기업의 30%인 2천여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, '17년까지 국내 기업의 70%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 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.

이를 위해 직무발명 홈페이지(www.employeeinvention.net)에 On-line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 및 발급 절차의 편리성을 제고하고, 인증기업에게 특허·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~6년차 등록료를 50%까지 감면하는 혜택과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며, 특허청 및 중기청의 8개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미래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의 확대를 추진한다.



〈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〉

- 4~6년분의 특허료 · 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50% 감면 : (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, '14. 3. 1. ~'16. 2. 29일까지 한시 적용)
- 특허 · 실용신안 출원 및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: (특허 · 실용신안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및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)
- 정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: (특허청) IP-R&D 연계전략 지원사업,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, 지역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(중기청)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, 융 · 복합기술 개발사업, 상용화기술 개발사업, 창업성장 기술 개발사업, 제품 · 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(미래부, '14년 사업공고부터 가점부여 예정) 모바일 융합제품화 기술 개발 및 R&D 역량강화 사업, SW 공학 기술현장 적용 지원 사업, IT 중소기업 공동 애로 해소 지원 사업

또한, IP 기반이 취약한 중소 · 중견기업이 보상제도를 도입 · 운영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하여 '기업진단→제도도입→애로해소'의 전 과정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, 방문 컨설팅이 어려운 기업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무발명홈페이지에 전문가 상담 코너를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했다.

나아가 제도 도입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권자인 CEO의 인식 전환을 위해 지역별로 CEO 모임을 활용한 설명회를 개최하고, 중소 · 중견기업이 보상규정을 쉽게 작성 ·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 사항*을 반영한 '직무발명보상규정 표준모델'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.

▶▶▶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신청 안내

➔ 운영방안

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 · 중견기업을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,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
* 근거 : 「발명진흥법」 제11조, 제11조의2 및 「우수기업 인증 운영요령」

➔ 신청자격

직무발명보상 규정을 보유하고,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실적이 있는 중소 · 중견기업

-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중견기업 :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

* 신청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면 제출

➔ 인증절차



문의

특허청 (042-481-8626) / 한국발명진흥회 (02-3459-2845)